

의안
번호

476

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6. 9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76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05.20.

라. 회부일자 : 2025.05.21.

2. 제안이유

- 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(2025.12.31)에 따라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	개관일	비고(前 위탁현황)
		대지	건물		
길음종합 사회복지관	삼양로2길 55 (길음제2동)	1,101	2,625 (지하2/지상5)	1992.4.1	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(위탁기간 2021.1.1~2025.12.31)

나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 (5년)

다. 위탁사무의 범위

-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10조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성북구 민간위탁 조례’)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재위탁 대상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간이 2025.12.31자로 만료되기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’)제5조1)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,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〈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〉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	종사자수	위탁법인	‘25년 사업비 (천원)
		대지	건물		위탁기간	
길음종합 사회복지관	삼양로2길 55 (길음제2동)	1,101	2,625 (지하2/지상5)	22명	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‘21.1.1.~’25.12.31.	1,328,441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(개정 2021.5.6.)

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,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 (개정 2021.5.6.)

□ 민간위탁의 적정성

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2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³⁾ 및 「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, 5년간 위탁할 수 있음.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운영은 적정해 보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3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~7.(생략)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